

# 監査人の 繼續企業報告에 관한 研究

高 成 孝\*

## 目 次

I. 序 論	1) 統計的 模型
II. 繼續企業報告의 發展過程	2) 行動研究
III. 繼續企業報告에 관한 諸 研究의 考察	3) 專門家시스템
1.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	IV. 未來의 研究方向
2. 監査人の 意思決定	V. 結 論

## I. 序 論

급격한 經營環境의 變化에 적응하지 못하고 企業破産이나 企業不實에 의해 기업의 利害關係者들 에게 예기치 않는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監査報告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에 의해 企業이 破産이나 不實이 발생된다면 監査人은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더구나 企業의 社會性, 公共性, 公益性이 강조되는 現代의 經濟社會에서 監査人の 社會的 責任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監査人은 監査節次의 適用과 그 結果에 대한 報告責任은 매우 중요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監査會社의 繼續企業여부의 평가에 관한 監査人の 報告責任은 美國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상당한 研究努力이 경주되어 왔다. 이러한 論爭은 監査責任委員會(CAR, 1978),<sup>1)</sup> 辯護士協會, 學界, 議會, 그리고 言論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논의에서의 問題는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CAR 1978, Libby 1979), 繼續企業報告의 영향, 繼續企業問題를 경험한 회사식별에 대한 監査人の 능력(Altman & McGough 1974, Kida 1980), 그리고 繼續企業의 不確實性報告에 대한 責任(AICPA 1978)<sup>2)</sup>을 포함하여 많은

\* 經商大學 會計學科 副教授

1) 1974년 설립된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監査人責任委員會(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y)는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보통 코헨(Cohen)위원회라고 부른다. 이 委員會는 獨立會計監査人の 책임에 관한 結論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반대중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會計監査人 이 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SAS No. 59와 SAS No. 34는 繼續企業의 不確實性問題를 포함한 경우에 意見拒絶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繼續企業報告라는 표현은 條件附 限定意見(SAS No. 59 이전), 수정된 適正意見(SAS No. 59), 및 意見拒絶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문제들을 논의하여 왔다. 특히 繼續企業의 不確實性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責任問題에서, 監査基準審議委員會(ASB)는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를 공표하여 監査人の 報告責任을 분명히 하였다. 이 基準은 SAS No. 34에 비하여 감사시 감사인에게 繼續企業의 가정을 평가하도록 확실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SAS No. 59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財務諸表利用者들의 믿음과 監査人들 자신이 믿고 있는 책임간의 '期待差異(expected gap)'를 해소시킬 目的으로 1988년 ASB가 공표한 9개의 基準\*가운데 하나이다. 이 基準의 공표를 통하여, ASB는 繼續企業報告야말로 財務諸表利用者에게 중요한 신호가 되며 감사인에게 계속기업에 대한 회사의 능력을 평가할 보다 큰 책임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았다(Ellingsen et al., 1989). 이러한 암묵적인 假定은 監査人の 기능을 떨어뜨리고 利用者에게 혼란을 준다는 근거로 繼續企業報告를 제외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監査人責任委員會(CAR)의 結論 및 勸告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論文의 目的은 繼續企業報告가 資本市場에 중요한 情報信號가 되고 監査人이 회사의 繼續企業狀態의 평가능력에 대한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監査基準審議會의 암묵적인 假定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假定은 계속기업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결정에 관한 광범위한 文獻을 고찰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文獻考察과 더불어, 본 論文의 부가적 動機는 감사인의 새로운 報告責任으로 인식되는 研究範圍를 요약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研究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會計監査基準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왔던 것을 개정된 會計監査基準(1991. 12)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意見決定과 감사인의 責任問題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 上場企業들의 倒産에 따른 不實監査에 대한 감사인의 責任이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시점에서 監査人の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研究는 이에 대한 理論的인 研究의 토대를 제공하고 監査實務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政策方向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研究의 內容과 方法은 다음과 같다. 다음 章에서 繼續企業報告의 發展過程을 살펴봄에 있어서 繼續企業報告의 文獻考察에 의하고, 나머지 두 章은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諸 研究의 고찰과 미래의 研究領域과 方向을 설명하고 개략적인 논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3)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監査基準審議會(ASA)는 1988년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 9건의 會計監査基準書(SAS)를 발표함으로써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期待差異의 해소에 관련된 노력을 일단락지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은 會計監査人和 監査報告書의 기능에 대한 財務諸表利用者と 議會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 II. 繼續企業報告의 發展過程

財務諸表作成의 기초가 되는 基本原則은 繼續企業의 가정이다. 즉 이러한 원칙은 회계에서 사용되는 評價와 配分の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減價償却과 償却節次는 이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만일 중대한 손실로 기업의 清算可能性에 직면하고 있다면, 繼續企業假定을 기초로 한 傳統會計는 진실한 상태를 결정하고 보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한 경우, 모든 資産과 負債의 가치는 문제가 되며, 純實現可能價值에 의한 清算會計가 더 적절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監査人은 繼續企業報告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繼續企業假定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대한 첫 專門機關의 공표는 1962년에 나왔다 (Rappaport, 1972). 證券去來委員會 (SEC)에 의한 會計連續通牒 (ASR) NO. 90의 公表는 기타 문제들 가운데 ASR NO. 90은 條件附 限定意見의 적절한 보고로 보았다. 이것은 報告日에 해결될 수 없는 회계상 중요성이 있는 去來나 事象에 대한 문제이다. 1962년 이전에, 繼續企業監査報告의 필요성과 그러한 문제는 監査人 개개인에게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ASR NO. 90 (1962)에 대한 반응으로, 美國公認會計士會는 SAP NO. 33 (1963)을 공표했는데, 여기에서 財務諸表 공개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監査報告에 비정상적 不確實性問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監査人에게 요청하였다.

「財務諸表의 檢證」이라는 表題로 ASR NO. 115 (1970)를 公表했을 때 SEC는 不確實性의 주제로 복귀하였다. 여기에서 繼續企業監査報告를 받은 회사는 1933년 證券法에 의해서 대중에게 證券을 공모하기 위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대중이 登錄證券에 대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34년 證券法에 의해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繼續企業監査報告에 대하여 중요한 특정 財務諸表의 성격에 관한 첫 공식적 언급은 SAS NO. 2 (1974)이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監査人은 기록된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不確實性이 존재할 경우, 限定意見이나 意見拒絶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問題에 대한 그러한 專門機關의 입장(예, SAP NO. 33, SAS NO. 2) 표명에도 불구하고, 監査人들은 繼續企業의 不確實性 공시에 대한 報告責任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監査人責任委員會 (1978)는 不確實性에 대한 SAS No. 2의 보고요구에 대한 有用性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 委員會는 條件附 限定意見을 없애자고 제안하였다. 條件附 限定意見을 삭제하자는 提案理由는 條件附 限定意見에서 監査人은 不確實性의 報告者이자 解釋者가 되어야 하며, 條件附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또한 條件附 限定意見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不確實性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委員會는 중대한 不確實性을

#### 4 産經論集

부각시키고 利用者들에게 不確實性의 評價와 미래의 營業活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不確實性에 관한 註釋事項을 새로 추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委員會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의 營業活動의 繼續性에 관한 회사의 능력에 대한 커다란 不確實性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監査條件에 의하기보다 財務諸表를 修正하거나 公示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委員會의 입장은 監査基準執行委員會(현재 監査基準審議委員會 ASB)에 의해 “不確實性 상황에서 監査報告書”란 표제를 가진 公開草案의 발행을 촉진시켰다. 그 公開草案의 제안에 따라 不確實性은 FASB NO. 5의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면, 監査意見を 修正하거나 限定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公開草案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반대에 의하여 그 委員會의 公開草案에서 공식적 행동을 연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sup>4)</sup>

1981년 3월, 「實體의 存續에 의문이 있을 때 監査人의 考慮事項」이라는 題目으로 SAS No. 34를 공표하였다. SAS NO. 34는 회사의 繼續性에 의문이 있을 때 따르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 基準에서 監査인은 沮害情報와 緩和情報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다. 만일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에, 의문이 남아 있을 때 監査인은 기록된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監査節次를 통하여 存續의 假定에 반대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SAS No. 34는 監査인에 대한 회사의 存續의 상태를 평가할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企業失敗에 대한 초기 경고 신호에서 監査인이 제한된 역할에 대해 經濟界, 言論界, 學界, 및 議會가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여, ASB는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監査人의 考慮事項」이란 題目으로 SAS NO. 59를 공표하였다.

새로운 SAS No. 59는 SAS NO. 34를 대체하며 다음 3가지 주요 관점에서 NO. 34와는 다르다. 첫째, SAS No. 34에서 監査인인 책임은 監査節次를 통하여 存續의 가정에 반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SAS No. 59는 감사한 財務諸表日로부터 일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 기간동안 繼續企業으로 존속할 實體의 능력에 실질적 의문여부를 평가하도록 監査인에게 요구하였다(즉 부정적 책임보다 확신적 책임). 둘째,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의 分類에 의문이 없더라도 監査인이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을 때, 監査報告書를 수정하도록 監査인에게 요구하였다. SAS No. 34에서는 存續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監査인에게 보고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資産의 回收可能性과 負債金額 및 分類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SAS No. 59는 條件附 限定意見を 삭제하고 適正報告書의 說明文段에 그것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러

4) 같은 시기인 1978년에 캐나다 勸許會計士會의 會計監査人役割特別委員會(일명 아담스위원회)에서도 不確實性의 보고는 經營者의 책임으로 모든 중대한 不確實성과 그 不確實성이 利益과 財務狀態에 미치는 영향을 註釋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不確實성에 대한 條件附 限定意見은 삭제하도록 결정하였다.

한 변화는 條件附 意見이 財務諸表利用者들에게 오해를 준다는 審議委員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SAS No. 59는 監査인이 기업의 存續能力에 대한 실질적 의문을 가질 때, 의문을 야기하는 환경을 說明文段에 부가하여 기술하고 適正意見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存續에 대한 실질적 의문 때문에 수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說明文段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財務諸表는 ABC회사가 繼續企業으로 존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었다. 財務諸表 註釋 15와 같이 ABC회사는 營業損失이 누적되고 있으며 繼續企業으로서 회사의 存續能力에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純資本이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한 經營計劃은 註釋 15에서 기술되고 있다. 財務諸表는 不確實性의 결과로 발생할 지도 모를 어떠한 수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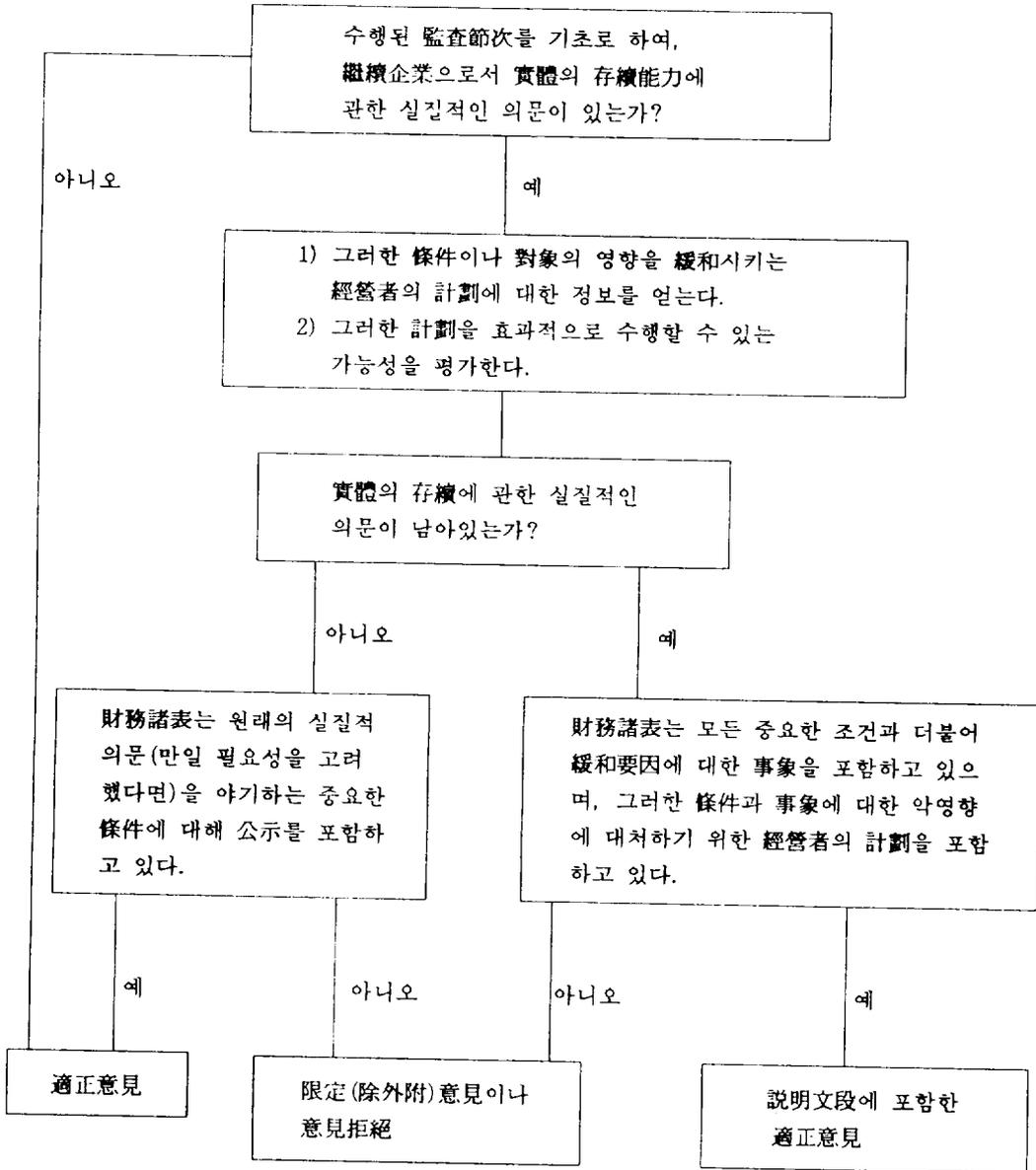
즉 SAS No. 34와 SAS No. 59의 내용을 비교하면 <表 1>과 같이 요약된다.

<表1> SAS No. 34와 SAS No. 59의 比較

	SAS No. 34	SAS No. 59
全般的 責任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이 감사에서 反對情報가 발견될 때만 고려함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이 모든 감사에서 고려하고, 監査節次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繼續企業能力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함
報告修正의 原因	資産의 회수와 負債의 분류 의문시 되는 경우	繼續企業으로서 存續할 수 없는 기업의 능력
報告修正에 필요한 의문의 정도	실질적	실질적
期間	대략 1년	감사한 財務諸表로부터 1년 이내
監査意見에의 영향	條件附 限定意見	意見文段 다음의 說明文段에 기술한 適正意見

SAS No. 59에서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監査人の 考慮事項을 흐름도로 요약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繼續企業으로서 實體의 存續能力에 관한 監査人의 考慮事項



이와같이 繼續企業報告의 發展過程에 대해서 그 동안 監査人의 報告責任은 '變形 (metamorphosis)'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개정 이전의 會計監査基準에서는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객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監査意見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限定意見(제25조 제3항) 또는 意見拒絶(제27조 제1항)의 監査報告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損失, 運營資金의 격심한 부족, 繼續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金融支援의 두절, 借入金의 約定事項 불이행, 産業 또는 전반적인 景氣沈滯에 따른 회사의 영향 등 複合的 不確實性으로 會計監査報告準則(352)에서 규정했었다. 監査人の 財務諸表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때 經營者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不確實性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會計監査報告準則 354)하여 가능한 監査人の 책임을 경감시키려 했던 것이 특색이었다.

1991년 12월에 改正된 우리나라 會計監査準則 가운데 立證監査節次(35-7), 特記事項(416-2), 그리고 不確實性 존재시 監査意見(460)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立證監査節次를 수행할 때, 감사실시과정에서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을 확인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監査人은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만을 검토할 목적으로 별도의 監査節次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감사의 전과정에 걸쳐서 기업의 存續能力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繼續企業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繼續企業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보다 더 監査人の 責任範圍를 강화시킨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監査基準書(SAS) No. 59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會計監査準則 354-7에서 會社存續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營業不振에 의한 缺損累積 및 運轉資本의 부족.
- ② 주요 財務比率의 악화, 借入條件의 불리한 변경, 주요 資産의 처분필요성 등 재무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諸般指標.
- ③ 操業中斷, 극심한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內部管理問題.
- ④ 訴訟事件이나 災害의 발생, 關係法令의 改廢 등 營業能力을 위협하는 外部環境 問題.

회사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문해소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經營計劃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① 資産의 處分計劃, ② 追加借入金이나 既存負債에 대한 借入條件의 수정을 위한 計劃, ③ 資金節減計劃, 그리고 ④ 增資計劃 등이다. 이러한 計劃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註釋表示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監査報告書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不確實性이 財務諸表 註釋으로 적절히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의 위배로 보아 이에 적합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確實性이 註釋에 적절하게 공시되었으면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監査意見を 제한하지 아니하고 監査報告書에 이를 特記事項으로만 기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監査人の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責任問題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繼續企業의

내용과 그 기간 및 실질적인 의문(substantial doubt)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監査實務에서 혼란과 利害關係者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즉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 여부는 營業活動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賣却이나 기업의 再組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기간 범위와 이에 따른 감사인의 미래 예측사상에 대한 한계에 관한 책임여부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 Ⅲ. 繼續企業報告에 관한 諸 研究의 考察

본 章에서 繼續企業報告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우선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를 조사한 研究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고찰은 繼續企業에 대한 不確實性에 직면할 때 監査人의 意思決定을 조사한 研究를 고찰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1) 監査人에 의해 사용된 變數를 분리하기 위한 統計的 模型을 이용한 研究, (2) 行動科學研究, 그리고 (3) 繼續企業에 대한 意思決定에 관한 專門家시스템(expert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研究이다.

#### 1.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

繼續企業報告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CAR(1978)은 繼續企業報告가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監査人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利用者에게 종종 잘못된 기대를 낳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財務諸表利用者들은 그 보고서가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러한 의견에 대한 약정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항을 監査人에게 공시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監査人들은 財務諸表利用者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어떤 監査人들은 不確實性에 대한 限定이나 修正意見의 표명은 訴訟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研究家들은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 증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表 2>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한 研究目録이다.<sup>5)</sup>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資本市場과라다임을 이용하였지만,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研究들 가운데 많은 研究들은 기타의 限定報告의 情報內容을 조사하였다.

〈表2〉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

研 究 者	年 度	研 究 方 法
A : 情報價値가 없다는 研究報告		
Ball et al.	1978	資本市場
Libby	1979	實驗
Davis	1982	資本市場
Elliot	1982	資本市場
Dodd et al.	1984	資本市場
Mutchler	1985	統計的 模型
Levitan & Knoblett	1985	統計的 模型
B : 情報價値가 있다는 研究報告		
Firth	1978	資本市場
Shank & Dillard	1979	設問調査
Banks & Kinney	1982	資本市場
Chow & Rice	1982	資本市場
Dopuch et al.	1986	資本市場

Firth(1978)는 投資家들이 限定意見의 이유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英國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한 限定意見의 형태는 繼續企業, 資産評價, 분리감사의견 (shared audit opinion), 계속된 限定意見, 그리고 監査人과 일치여부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으로부터의 이탈을 포함하고 있다. 限定意見을 받은 標本企業은 適正意見을 받은 기업과 짝을 지었다. 그 기업들은 年度, 産業, 및 크기를 基準으로 대응시켰다. 5년동안 20일 事件期間 (event period)의 월자료를 이용하여, 繼續企業, 資産評價, 및 意見拒絶을 받은 기업에 대해 유의한 負의 가치조정을 보고한 것이다. 기타의 限定形態는 아주 작거나 가치없는 수정과 관계되었다. Firth(1978)는 서로 다른 형태의 監査限定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 投資家들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Bank & Kinney(1982)는 不確實性的 限定意見은 주가에 逆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1969-75기간 동안의 不確實性的 92개 標本企業 株價收益을 同一産業, 期間, 및 非期待收益 부호로 92개 통제포트폴리오표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92개 標本企業의 株價收益이 統制集團보다 더 나쁘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적자기업에 대한 株價收益은 限定意見企業에서 經營管理에 대한 관리상 註釋公示만을 행한 기업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Chow & Rice(1982)는 限定意見이 株價에 반영되는 逆情報를 제공하는지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90개의 限定意見企業과 90개의 適正意見企業과 대응시켰다. 市場과 産業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適正意見을 받은 기업이 限定意見을 받은 標本企業보다 더 높은 3개월의 平均收益率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限定意見이 株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假說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결과는 限定監査報告가 이용자에게 情報內容을 갖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監査人이 利用者에게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최근 研究에서, Doupuch et al. (1986)은 限定監査意見의 公示전달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限定意見에 대해 유의적인 주가반응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3일 事件期間을 통하여 109개 標本觀察値에 대한 平均非正常收益率은 -4.7%로 0보다 적은 유의성있는 결과가 나왔다. 더우기 非正常收益의 크기는 기업이 전년도의 유사한 限定意見을 나타냈는지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資本市場研究는 限定監査意見의 公示에 대한 주가반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604개(이들 중 繼續企業意見에 관련된 것은 63개)의 첫년도 監査限定意見의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Dodd et al. (1984)은 限定意見이 公示될 때 주가영향의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up>6)</sup> Dodd et al. (1984)은 초기의 연구(예, Chow & Rice 1982)와 상충되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1) 限定에 대한 서로 다른 발표일, (2) 事件期間 동안 다른 面貌(window), 그리고 (3) 非正常收益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동안 발표한 기타정보의 外生效果이다. 그런데, Dodd et al. (1984)과 유사한 결과를 Davis (1982), Levitan & Knoblet (1985) 및 Elliot (1982)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러한 상충되는 결과는 限定監査報告의 情報內容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資本市場研究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몇몇의 연구자들(예, Bailey 1982)이 있다. 그는 監査意見이 財務諸表 결과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의견발표일 전후에 주가반응 조사에 의해 監査意見 자체의 情報價値를 분리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문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선호되는 방법은 實驗研究라고 제안하고 있다.

Bailey (1982)의 비판에 이어 Mutchler (1985)는 繼續企業意見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의견과 財務情報의 영향을 없애려고 시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繼續企業報告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 그 보고서는 쓸데없는 증거요소가 된다는 이유였다.

6) 그들은 이 結果와 1986년 그들의 研究結果를 조정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媒體公示와 관련된 株價反應은 媒體發表時點의 다른 뉴스공표에 기인하거나 媒體公示標本에서 限定意見은 媒體에 의해 보고되지 않는 限定意見보다 기대가 작거나 더 심한 제약을 나타낸다는 제안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는 繼續企業報告를 받은 119개의 製造企業과 繼續企業報告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는 119개 製造企業의 統制集團을 구분하였다. 問題企業은 15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경험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참조 Mutchler 1984). 이들 회사를 가지고 判別分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sup>7)</sup> 妥當性試査에 기초를 둔 그의 判別分析의 결과는 비율모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監査意見決定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財務諸表利用者가 監査人이 비율의 식별세트를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繼續企業意見이 불필요한 정보임을 의미하였다.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이용하여, Menon & Schwartz(1978)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실상 破産(非破産)기업의 妥當性試査(validation sample)에 대해서, 그 模型은 모든 信賴性豫測(즉, 豫測確率 $<0.1$  또는  $>0.9$ )에 대해 거의 완전한 正確性(단지 하나의 기업만 잘못 분류됨)을 나타냈다.

Shank & Dillard(1979)는 被驗者에 대한 條件附 意見의 認知有用性を 결정하기 위해 財務分析家와 財務管理者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不確實性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는 선호된 방법이 條件附 意見에 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Libby(1979)는 財務諸表의 註釋에 不確實性を 公示하는 것과 註釋公示에 대한 監査人の 條件附 限定事項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貸出意思決定行爲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의 결과는 不確實性の 公示가 貸出者의 危險評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監査人の 不確實性 限定意見을 부가한 것은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에 대한 研究結果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한 12개의 研究 가운데, 5개는 繼續企業報告가 財務諸表利用者에게 情報價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5개의 研究 가운데, 4개는 監査意見과 財務諸表영향을 집합시키기에 약한 방법으로 비판받아온 資本市場과라다임을 사용하고 있다. 資本市場과라다임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研究는 設問調査인데, 이것은 모호한 결과를 얻고 있다. 즉 응답자 가운데 40%는 繼續企業報告를 不確實性を 전달하는 선호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이 財務諸表에 대한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증거는 오히려 약하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의 결여를 지지하는 증거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7개의 研究 가운데 4개는 資本市場接近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을 사용한 研究結果의 의미는 단순하다는 것이다. 한편 Mutchler(1985)와 Menon & Schwartz(1987)는 감사인의 繼續企業報告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Libby(1979)의 결과는 감사인의 不確實性 限定意見이 貸出者의 貸出危險의 평가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7) 判別모델은 推定標本으로부터 추정하고 任意標本으로부터 妥當性檢討를 한다.

비록 명백한 結論이 내려지기 전에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繼續企業報告가 중요성이 없음을 지지하는 이용가능한 證據가 필요성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研究의 대부분(Libby를 제외한)이 投資者에 대한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을 조사하여온 것이다(주가반응에 의한 증거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監査意見에 의존하는 기타 집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財務諸表利用者에 대한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은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 2. 監査人の 意思決定

繼續企業의 不確實성에 직면하여 監査人の 意思決定過程을 조사하는데 이용한 세가지 接近方法이 있다. 이는 (1) 監査인에 의해 이용된 變數를 분리하기 위한 統計的 模型을 이용한 研究, (2) 行動研究, 그리고 (3) 專門家 시스템이다. <表 3>은 이러한 범위를 기초로 한 研究目錄이다.

<表 3> 繼續企業意思決定에 관한 經驗的 研究

研 究 者	年 度	方法/狀況(task)
A: 統計的 模型		
Altman & McGouth	1974	判別模型
Deakin	1977	判別模型
Mutchler	1985	判別模型
Levitan & Knoblett	1985	判別模型
B: 行動研究		
Kida	1980	렌즈模型/期待價
Kida	1984	情報探索
Trotman & Choo	1988	메모리
Asare	1989	情報評價
Messier	1989	情報評價
C: 專門家 시스템		
Dillard & Mutchler	1986	AOD
Biggs & Selfridge	1986	GC-X
D: 其他		
Mutchler	1984	인터뷰

## 1) 統計的 模型

破産豫測을 위한 財務比率의 能力을 조사한 많은 研究들이 있는데, Altman & McGouth (1974)는 破産豫測模型을 가지고 監査人の 繼續企業 監査報告를 비교함으로써 監査人の 意思決定過程에 관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제안하였다.<sup>8)</sup> 限定意見 또는 適正意見を 받은 失敗企業의 재무적 속성을 식별함으로써 그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研究는 Altman (1968)에 의해서 개발된 判別模型을 가지고 34개 破産企業의 標本에 대해 발행한 監査意見 形態를 비교하였다.<sup>9)</sup> 그들의 결과는 그 判別模型이 破産된 마지막 財務諸表資料를 이용하여 破産企業을 식별하는데 82%의 정확성을 나타냈다. 한편 監査人은 破産企業의 44%만 繼續企業 監査報告를 발행하였다.

유사하게 Deakin (1977)은 47개 失敗企業의 標本을 사용하여 破産模型의 豫測正確性을 監査人の 意見과 비교하였다. 이 模型은 실패 2년전 83%의 失敗企業을 정확하게 식별하였다. 監査人の 繼續企業 監査報告는 그 경우의 15%만 발행하였다.

Levitan & Knoblett (1985)는 監査人이 破産模型의 문제로서 同一變數와 加重值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두 가지 判別函數를 설계하여 비교하였다. 첫째의 判別函數는 破産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을 분류하였다. 標本은 1980년 또는 1981년 11장에 신청서를 제출한 Compustat산업목록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였다. 건전한 회사의 對應標本은 동일한 源泉資料에서 추출하였다. 대응은 SIC Code와 자산크기의 접근치를 기초로 하였다. SAS No. 34에 의해 명시된 비율을 사용하여, 多變因判別分析(MDA)을 사용하였다. 監査人이 破産豫測變數를 사용했는지 여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번째의 MDA함수는 繼續企業報告를 받은 32개 기업과 건전한 32개 기업을 대응시켜 설정하였다. 아마도 두 함수를 대조함으로써 監査人이 財務變數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들 변수가 破産模型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는지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監査人에 의해 사용된 비율에서 중복되며 破産豫測模型에서 중복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두 모형 모두 당해년도 純資産/總負債와 계속된 부의 현금흐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破産模型에서 이용된 가장 중요한 변수는 株主持分에 대한 3년동안의 營業利益의 기울기의 비율인 한편, 監査人은 總資産에 대한 總負債比率를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失敗豫測에 대한 監査人の 正確度(繼續企業報告를 발행한 증거로서)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8) 監査人の 繼續企業 意思決定에 연관되지 않는 破産豫測模型에 관한 研究는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破産豫測에 사용한 다른 經濟學的 技法에 관한 考察은 Zavgren (1983)을 참조.

9) 이 모델에서 사용된 財務比率은 (1) 運轉資本/總資産, (2) 當期純利益/總資産, (3) 利子과 税金差減前純利益/總資産, (4) 持分の 市場價値/總負債의 帳簿價値, 그리고 (5) 賣出額/總資産이었다.

〈表 4〉는 監査人と 模型의 正確性을 비교한 研究目錄이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被監査會社の 繼續企業狀態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감사인간의 모형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들 연구는(이후에 논의될 위험경고에 대한 주제) 監査人이 被監査會社の 繼續企業狀態를 평가할 능력에 대한 ASB의 함축된 가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表 4〉 監査人 對 模型의 正確性

研究 者	年度	比率	模型의 正確性	監査人의 正確性	失敗以前年度
Altman & McGouth	1974	5	82%	44%	1년
Deakin	1977	5	83%	15%	2년
Kida	1980	5	90%	83%	N/A*
Levitan & Knoblett	1985	26	90%	84%	1년
Mutchler	1985	6	83%	N/A	N/A
Menon & Schwartz	1987	7	LR**	N/A	N/A

\* N/A; 적용할 수 없음

\*\* LR;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 모형은 모든 信賴性豫測(즉, 豫測確率 < 0.1 또는 ≥ 0.9)에 대하여 2개 회사만(31개 회사로부터) 잘못 분류되었다.

첫째, Altman & McGouth(1974)는 繼續企業意見を 고려하고 있는 監査人이 동시에 破産豫測을 한다고 가정하면 의미있는 비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SAS No. 34에 만일 資産의 使用價値가 資産이 實現可能價値를 나타낸다면 歷史的原價에 기초를 둔 財務諸表는 적정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Kida(1980)는 破産모델 豫測과 실제의 監査限定 意思決定과 비교하여 監査人의 問題會社の 식별능력을 도출하는데 타당한 추론을 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보고를 한정하는 監査人의 意思決定이 限定이나 아니냐에 따라 인지된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최대한 限定하는 監査人은 被監査會社の 債權者들의 소송가능성에 대해 더 강한 신념을 갖는 한편, 최소한 限定하는 監査人은 限定意見이 被監査人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더 강한 신념을 갖는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Wilkerson, 1987 참조). 이러한 경고는 감사인의 繼續企業 報告決定이 破産豫測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상의 研究가 監査人의 意思決定過程에 어떤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監査意見 形成過程에 관해 단지 제한된 추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Menon & Schwartz(1987)는 그들의 研究에서 분리한 變數가 감사인의 意思決定過程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아직 식별되지 않는 要素로서 단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유사하게 監査人들은 産業 및 外國競爭에 대한 經濟展望과 같은 質的要素를 그들의 意思決定過程에 포함시킬지도 모른다. 이러한 變數들은 意思決定過程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시도한 統計的 模型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한 問題는 行動研究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2) 行動研究

감사인의 繼續企業 意見決定에 관한 行動研究는 情報探索過程(Kida, 1984)이나 情報評價課業(Asare 1989, Messier 1989)에서 被驗者로 auditor manager와 partner를 이용하였다. Kida (1980)는 問題會社의 識別과 限定意見의 表明간을 구별하였다. 그는 문제의 가능성 이외의 다른 요소(限定에 관한 인지된 결과와 같은)가 限定意見이 발행되기 이전에 監査人에 의해서 고려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감사인의 실제 限定行爲의 정확성을 破産模型과 비교한 研究는 감사인의 問題認識能力을 저평가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측을 검증하기 위하여, Kida (1980)는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지적하는 감사인의 능력이 數學的 模型의 正確性和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da는 문제가 있는 20개 회사와 문제가 없는 20개 회사를 포함하여 40개 회사를 선택하였다. 이들 問題會社는 1974. 5-1975. 4까지 Disclosure Journal Cumulative Index에 기록된 것에서 선택하였다. 산업 및 자산크기에 의해 대응시킨 문제가 없는 20개 회사는 30,000개 美國의 주도기업에서 선택하였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없는 회사를 분류하도록 27명의 partner에게 40개 회사 각각에 대한 5가지 비율의 프로파일 제시하였다. Kida (1980)는 올바르게 반응한 평균 숫자는 40개 회사 가운데 33개로 平均 正確度 8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比率은 환경모형에 의해 달성된 90%의 정확도와 좋은 비교가 된다. 문제회사의 識別이 限定決定에 必要條件이 아니라는 그의 추측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는 평균문제에서 18개 회사에 대해 언급되었으나 단지 13개 限定意見을 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研究의 둘째 측면에서, Kida는 限定決定과 態度간(限定이나 아니냐에 대한 인지결과에 의해 측정)의 相互作用에 관한 추측을 조사하였다. 限定意見의 발행이나 아니냐에 대한 결과(아주 나쁜에서 아주 좋은 까지의 표시로 초기값을 가지고 7점척도에 의함)와 이들 결과가 나타날 信念表示(아주 불가능한에서 아주 가능한까지를 나타내는 7점척도)에 대한 평가를 被驗者에게 요청하였다. 態度는 期待價 接近方法(expectancy valance approach)에 의해 측정되었다(限定은 어떤 결과와 이들 결과의 평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의 산물로서).

그 결과는 限定意見의 수와 限定決定이 인지된 限定結果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限定態度간의 유의적인 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平均信念과 評價反應의 비교를 통하여 만일 문제가 없는 회사에 대해 限定意見을 준다면, 최소한의 限定을 준 監査人は 감사의뢰인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依頼인이 소송을 제기할 지도 모르며, 會計法人의 평판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며, 그리고 依頼人과의 관계악화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만일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限定意見을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限定意見을 준 監査人は 被監査會社の 債權者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不實監査에 대한 압력을 제공할 것이며, 會計法人의 평판이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會計擔當者의 責任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인터뷰와 질문서과정에 기초하여, Mutchler (1984)는 잠재적 繼續企業問題를 가진 회사의 식별(繼續企業報告를 받은 問題會社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에 유용하도록 8대 會計法人의 16인 파트너에 의해 인지된 14 (10) 개의 변수를 식별하였다. 잠재적 繼續企業問題會社를 식별하는데 이용된 變數는 法定管理나 再組織에 들어간 경우, 利子支給不能, 3년동안 실질적인 損失이나 缺損, 그리고 負의 현금흐름이나 負의 純運轉資本을 포함하였다. 問題會社가 식별이 되면, 監査人は 繼續企業報告가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계획 및 經營計劃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의 연구(繼續企業決定 過程을 모형화하는데 관심있는 研究者에게 유용함)에서 흥미있는 결과는 대부분의 監査人들이 회사의 繼續企業狀態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처럼 比率分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사용한 比率는 現金흐름/總負債, 流動比率, 總負債에 대한 純資產, 總資產에 대한 總負債와 같은 부채관련비율을 강조하였다.

繼續企業判斷을 할 때 反對情報과 緩和要素의 사용(Asare, 1989)과 이를 위한 監査人的 情報探索(Kida, 1984)에 대한 假說的 構造와 영향을 조사한 두 가지 연구가 있다.

Kida (1984)는 假說的 構造가 監査人的 증거에 대한 情報探索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監査人들을 失敗 또는 存續假說條件에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被驗者에게 20개의 단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10개는 失敗를 나타내고 나머지 10개는 存續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監査人이 立證戰略(特定 假說을 지지하는 증거를 선호하는 경향)을 수용하면, 存續假說하에서 활동은 存續을 지지하는 보다 많은 자료를 원할 것이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存續集團에 속한 監査人は 存續을 지지하는 보다 많은 자료를 원하는(즉 立證戰略) 반면, 양쪽 監査人 集團은 失敗를 나타내는 情報項目의 동일한 量의 자료를 원함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제한된 지지는 감사인의 假說形成方法이 監査證據를 탐색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課業은 차례로 探索戰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順次的 判斷過程의 성격을 인식한지 못한 것이다. Kida (1984)는 이런 가능성을 기대하여 판단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情報探索研究라고 하였다.

Asare (1989)는 감사인의 證據評價에 대한 假說構造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는 反對情報(緩和

要素)를 처리한 후 감사인의 信念修正이 存續(失敗)의 假說을 가진 감사인에 대해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豫測은 反駁情報에 보다 많은 加重值가 부여되고 立證情報에 대해서 증거의 情報內容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反對情報은 실패에 대한 立證시보다 存續에 대한 反駁시에 보다 많은 加重值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構造가 증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냈다. Asare는 감사인의 證據의 方向(즉 立證對 反駁)보다 오히려 證據의 情報內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研究家들의 주의를 끌어왔던 또 다른 課業變數는 증거를 평가하는데 시간적 順序인데, 즉 이것은 反對情報과 緩和要素를 평가하는 順序가 감사인의 繼續企業判斷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두 研究가 이 문제를 조사하였다.

Asare(1989)는 감사인의 繼續企業 意見決定을 두 단계과정으로 성격지었다. 첫 단계에서 監査人은 主觀的 信念  $[P(C|E)]$ 에 이르는데 證據 E(反對情報 및 緩和要素의 형태)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C는 회사가 계속 存續할 것이라는 事象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監査人은  $P(C|E)$ 를  $P^*(C)$ 와 비교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P^*(C)$ 는 適正意見을 표명하기 위한 最大許容主觀的 信念이다. 監査人은 만일  $P(C|E) < P^*(C)$  라면 수정한 보고를 발행할 것이다.

順次的 信念修正에 관한 一般模型(Einhorn & Hogarth, 1987)을 이용하여, Asare는 증거의 순차적 처리과정이 감사인의 존속가능성의 평가에서 最近效果(recency effect)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反對情報에 이어 緩和要因을 평가한 監査人이 동일증거를 逆順序로 평가한 감사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適正意見을 표명할 것이라는 것을 가설화하였다. 그의 결과는 可能性評價 및 意見決定 모두에게 最近効果의 예측을 지지하였다. 더우기 被驗者의 報告決定은 가설화한 두 단계 信念修正過程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監査人이 繼續企業 意思決定을 할 때 可能性評價에서 最近效果의 豫測은 Messier(1989)에 의해 보여 주었다.

Trotman & Choo(1988)는 繼續企業狀態의 상황에서 專門監査인과 初心監査인에 의해 定型的情報와 非定型的情報의 回想하는 것과 群集化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3년 이상의 監査經驗을 가진 上位水準에 있는 監査人은 專門家 集團에 포함시켰고 6개월 미만의 實務經驗을 가진 새로 충원된 사람은 初心者集團에 포함시켰다. 被驗者들에게 가설화한 회사와 관련된 明細書를 읽도록 하였다. 그 明細書를 읽은 후, 被驗者들에게 가설화한 회사를 회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회상하도록 요구하였다. Trotman & Choo(1988)는 다음과 結果를 보고하였다. (1) 專門家は 定型의 項目보다 非定型의 항목을 더 유의적으로 회상한 반면, 初心者는 그렇지 못하였다. (2) 專門家は 初心者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은 수의 非定型의 항목을 회상하였다. (3) 定型의 항목의 수를 회상하는데 있어서 專門家和 初心者간의 차이가 없었다. (4) 定型性을 기준으로 회상한 것을 群集化하는 일은 初心者보다 專門家에 대해서 더 높은 유의성이 있었다. 외양적으로 專門監査인과

初心監査人간의 圖式(schema) 개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정보와 관련된 圖式에 부호화(encoding)하며, 저장하고 수정하는데 있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會計法人에서 매니저와 파트너에 의해 繼續企業 결정을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上位者가 새로 충원된 사람과 다른 圖式을 개발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앞선 고찰에서 繼續企業決定에 관한 직접적인 관찰은 行動研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몇몇의 研究는 情報의 탐구와 유용성에 관한 구조(framing), 시간적 순서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構造에 영향을 미치는 研究는 감사상 判斷이 일반적 판단과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Kida의 결과는 原初假說이 構造化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監査人은 동일한 反對情報의 量을 탐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슷하게도 Asare에 의한 연구는 감사인이 立證이나 反駁傾向이 아니고 오히려 證據의 情報內容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결과 모두 被驗者가 立證屬性에 대한 경향을 보고한 心理學에서의 일반적 研究와 일치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證據의 時間的 順序의 영향에 관한 두 研究는 心理學에서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監査人이 構造化效果가 아닌 最近效果에 대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들 研究는 被監査會社의 繼續企業狀態를 평가하는 감사인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研究設計가 되지 못한 한편, 課業變數(時間的 順序)가 의견선택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아는데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보다 많은 行動研究가 繼續企業判斷을 행하는 감사인의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監査人이 被監査會社의 繼續企業狀態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 3) 專門家 시스템(Expert Systems)

감사에서 專門家 시스템에 관한 研究는 대동단계에 있다(Messier & Hansen, 1987). 본질적으로, 專門家 시스템은 특정 지식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專門家 시스템의 발전은 그의 意思決定過程을 설명할 능력이 있는 인정된 감사인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專門家의 決定過程은 다른 監査人에 의해 결정도구로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두 가지 專門家 시스템이 繼續企業決定에 대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다. 양 시스템은 專門的 文獻의 考察과 監査專門家와의 인터뷰를 기초로 개발되어 왔다. GC-X (Biggs & Selfridge, 1986) 시스템은 繼續企業問題의 인식, 繼續企業問題의 원인의 決定要因, 經營計劃의 評價와 繼續企業判斷의 표명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繼續企業問題를 인식하기 위해 財務成果(당기 流動性과 營業成果)의 두가지 영역을 이용한다. 經營計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의 實現可能性과 目的

適合性 모두를 포함한다. 계획의 實現可能性은 계획의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를 미래사상의 추론을 포함하는 한편 계획의 目的適合性은 식별된 문제에 緩和, 複合, 또는 非合目的인 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이러한 중간판단을 기초로 이 시스템은 의견을 권고한다. GC-X의 豫備評價는 그 시스템산출이 專門監査人の 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GC-X에 의해 현재 이해되고 있지 않는 産業과 競爭의 展望을 포함하는 監査人에 의해 사용된 다른 개념이 있다. Dillard & Mutchler(1986)에 의해 개발된 監査意見決定(Audit Opinion Decision; AOD)은 PC수행을 위해 수용되고 있으며 CG-X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비록 專門家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그 원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문제는 專門家 시스템의 산출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專門家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研究設計上 대부분의 非構造的 問題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專門機關의 의견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V. 未來의 研究方向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과 監査人の 繼續企業意見決定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적이든 그 목적달성에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해 왔음을 앞서의 고찰에서 명백하게 보았다. 이러한 성공의 결여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繼續企業報告를 발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감사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이다(Chow et al., 1987). 둘째, 현존 研究項目의 초점이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 미래의 연구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値를 조사해 온 대부분의 이전의 研究는 의견제시일 전후의 投資家反應(주가반응에 의한 증거로서)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한 초점은 감사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다른 利害關係者들의 존재인식에 실패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 비록 繼續企業報告가 한 집단에 유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情報利用者들에게 유일한 情報源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미래의 研究는 繼續企業報告 발표일에 주가반응을 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미래의 研究는 債權者, 被監査會社의 投資/生産決定, 規制當局, 勞使關係 및 契約協定에 관한 繼續企業報告의 영향을 탐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시켜 본다면 被監査會社와 監査法人에 관한 繼續企業意見의 영향이다. 繼續企業報告의 존재는 자기실현예언을 이끈다는 것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연구가 이런 현상이 어떤 체계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는 미래의 研究는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監査法人에 대한 의견의 영향에 관하여, 부적절한 의견제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데 조명될 것이다. 그러한 의견이 被監査會社の 손실을 입힐 것인가,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 영향은 被監査會社の 産業과 크기, 所有構造 및 기타 狀況變數와 같은 變數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 따른 研究는 意見決定이 破産豫測과 동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 監査人들은 繼續企業判斷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集團構成員 가운데 광범위한 상의를 한 후에 監査集團에 의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수의 현행 단일 감사인의 行爲研究의 결과가 集團設定을 일반화시키는 정도의 개방된 문제이다. 예를들면 集團決定의 利點이나 考察過程은 초기 行爲研究에서 보고된 順序効果(Asare, 1990)와 構造効果(Kida, 1984)를 제거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미래 研究에 대한 실속있는 영역은 集團構成員이 발행할 監査報告의 形態에 관한 의견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일 것이다.

유사하게 繼續企業報告의 결정은 被監査會社와 폭넓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일 것이다. 장차 被監査會社와 監査人간의 협상과정에 관한 研究가 조사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被監査會社는 繼續企業報告를 발행한다면 監査人 교체에 대한 위협을 할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위협은 보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公開草案에 대한 권고에서, ASB에서는 SAS No. 34는 감사인의 訴訟責任이 뚜렷한 부담에 초점을 두었고 SAS No. 59는 보다 많은 訴訟責任을 부여할 투기를 한다고 하였다. 감사인의 잠재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基準의 영향을 조사한 研究는 ASB에 대해 유용한 정책제안이 될 것이다. 예를들면 SAS No. 34(부정적 책임), SAS No. 59(긍정적인 책임), 그리고 무책임하에서 保險計理士의 책임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繼續企業報告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이 된 후,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報告責任問題를 놓고 볼 때 현행의 基準에서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모든 감사에서 합리적 기간동안 實體의 存續能力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기업의 存續能力에 대한 財務諸表상 公示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문제이다. 셋째, 기업의 存續能力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을 때 監査報告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繼續企業의 發展過程과 이와 관련된 諸 研究를 고찰하고 미래의 研究方向을 제시하였다. 監査人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대의 經濟社會에서, 회계의 基本假定이 되는 繼續企業에 대한 報告問題는 감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繼續企業報告는 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감사에서 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SAS No. 59

(1988)를 통하여 모든 監査節次의 적용과정에서 기업의 存續能力을 검토하도록 하고 監査人에게 그 결과에 대한 報告責任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1년 12월에 개정된 會計監査基準에서 SAS No. 59의 입장과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다.

주로 資本市場에서 株價反應에 의한 증거를 통하여 繼續企業報告의 情報價值 즉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인의 繼續企業報告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諸 研究들은 繼續企業의 不確實性에 따른 감사인의 意思決定過程을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여 왔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아직도 미해결된 많은 領域이 남아 있다. 이는 감사인의 意思決定過程에서 통찰력을 제공하여 주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監査目標에 접근하도록 하는 감사인의 行動研究의 많은 영역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SAS No. 59를 통하여 ASB는 전체적 감사의 역할로서 감사한 기업의 존속에 관한 보고에 대해 監査人에게 긍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시장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고 監査人들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이용가능한 증거를 나타낸다면, 그러한 보고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市場信號化와 監査人의 능력 모두에 대해서, 이상의 文獻考察은 그러한 새로운 요구에 대해 아직 결정적 근거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전문가에 대한 최근 美國 議會의 공격과 규제에 대한 專門職業人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S No. 59는 학계의 연구의 결과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2월에 改正된 우리나라 會計監査準則 가운데 立證監査節次(354-7), 特記事項(416-2), 그리고 不確實性 존재시 監査意見(460)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立證監査節次를 수행할 때, 감사실시과정에서 繼續企業으로서 존속여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의문사항을 확인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문해소에 필요한 제반 經營計劃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經營計劃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여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註釋表示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監査報告書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不確實性이 財務諸表 註釋으로 적절히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의 위배로 보아 이에 적합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確實性이 註釋에 적절하게 공시되었으면 繼續企業으로서의 존속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監査意見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監査報告書에 이를 特記事項으로만 기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개정된 會計監査基準은 개정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감사인의 意見形成過程과 繼續企業報告責任의 問題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研究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앞으로 많은 研究를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政策方向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三逸會計法人, 三逸監査論, 서울:三逸會計法人, 1992.
- Altman, E. T. 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The Journal of Finance*, (September) : 589-609.
- \_\_\_\_\_. and McGough, T. 1974. Evaluation of a Company as a Going Concern, *Journal of Accountancy*, (December) : 51-57.
- AICPA. 1974.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AS No. 2, AICPA, New York.
- \_\_\_\_\_. 1988. 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an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SAS No. 59, AICPA, New York, (April).
- \_\_\_\_\_. 1981. The Auditor's Consideration When a Question Arises about an Entity's Continued Existence, SAS No. 34, AICPA, New York, (March).
- \_\_\_\_\_. 1963. 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s No. 33, AICPA, New York.
- Asare, S.K. 1989.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 Interaction of Task Variables and the Sequential Processing of Evid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sona.
- Bailey, W. T. 1982. An Appraisal of Reserch Designs Used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Content of Audit Reports, *Accounting Review* : 141-146.
- Banks, D.W., and W.R. Kinney. 1982. Loss Contingency Reports and Stock Prices :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 240-54.
- Biggs, S. F., and M. Selfrigdge. 1986. CG-X : A Prototype Expert System for the Auditor's Going Concern Judgemen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nnecticut, (January).
- Chow, C., and Rice, S.J.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Share Prices : an Investigat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Winter) : 35-53.
- \_\_\_\_\_. Mcnamee, A., and Plumlee, D. 1987.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Audit Step Difficulty and Criticalness : Implications for Audit Research,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 123-133.
- Davis, R.R. 1982. An Empirical Evaluation of Auditor' 'Subject-to' Opinion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Fall) : 13-32.
- Deakin, E. B. 1977. Business Failure Prediction : an Empirical Analysis, in *Financial*

- Crisis : Institution and Markets in a Fragile Environment, Editors E. I. Altman and A. W. Sametz, John Willey & Sons, New York : 72-98.
- Dillard, J. F., and J. F. Mutchler. 1986. Knowledge-Based Expert Systems for Audit Opinion Decisions, Technical Report Submitted to the Peat, Marwick, Mitchell Foundation.
- Dodd, P., Dopuch, N., Holthausen, R., and Leftwich, R. 1984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Stock Prices : Information Content, Announcement Dates and Concurrent Disclo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April) : 3-38.
- Dopuch, N., Holthausen, R., and Leftwich, R. 1986. Abnormal Stock Returns Associated with Media Disclosures of 'Subject to' Qualified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May) : 1-25.
- Einhorn, H. J., and R. M. Hogarth. 1987. Adaptation and Inertia in Belief Updating : the Cotrast/Inertia Model,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 Ellingsen, J. E., Pany K., and Fagan, P. 1989. SAS No. 59 : How to Evaluate Going Concern,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 51-57.
- Elliott, J. A. 1982. Subject to Audit Opinions and Abnormal Security Returns : Outcomes and Ambiguit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Pt. II) : 617-38.
- Firth, M. 1978. Qualified Opinions : Their Impact on Investment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July) : 642-50.
- Kida, T. 1980. An Investigation into Auditor's Continuity and Related Qualification Jud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 506-523.
- \_\_\_\_\_. 1984. The Impact of Hypothesis-Testing Strategies on Auditors' Use of Judgement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 332-340.
- Levitan, A. S. and Knoblett, J. A. 1985. Indicators of Exceptions to the Going Concern Assumption,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on and Theory*, (Fall) : 26-39.
- Libby, R. 1979. The Impact of Uncerntainty Reporting on the Loan Decis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 35-57.
- Menon, K. and Schwartz, H. 1987.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udit Qualification Decisions in the Presence of Going Concern Uncertain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Spring) : 303-315.

- Messier, W.F. 1989. The Sequencing of Audit Evidence : Its Impact on the Extent of Audit Testing and Report Formu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Fisher School of Accounting ,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September).
- Messier W.F., and Hansen. J.V. 1987. Expert Systems in Auditing : the State of the Art,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Fall) : 94-105.
- Mutchler, J. 1984.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 668-82.
- \_\_\_\_\_. 1984. Auditor's Perception of the Going Concern Opinion,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 17-30.
- Rappaport, L.H. 1972. SEC Accounting Practice and Procedure, Third Edition. The Reonald Press Company, New York.
- Shank, J., and Dillard J. 1979. 'Subject to' Opinions : a Preliminary Investiagtion of Statement Users' and Statement Isuers' Perceptions, Symposium on Auditing Research III, by an Audit Group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epartment of Accounting.
- Trotman, K. T., and Choo. F. 1988. Experties, Typicality of Information Content and Auditors' Knowledge Structures, Working Paper.
- Wilkerson, J. 1987. Selecting Experimental and Comparison Samples for Use in Studies of Auditor Repor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 161-168.
- Zavgren, C.V. 1983. The Prediction of Corporate Failure :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Spring) : 1-38.